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통계청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처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식 개정 목록(시행규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 번	서 식 명	근 거 법 령	서식 호수	개정 내용	쪽수
1	협력사업 신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	“통계청장” 을 “국가데이터처장” 으로 변경	4
2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상동	34	“통계청장” 을 “국가데이터처장” 으로 변경	6

협력사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	-----	--------

①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상대자	상호(법인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③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코드번호
	사업내용 및 규모	
	사업장소	
	사업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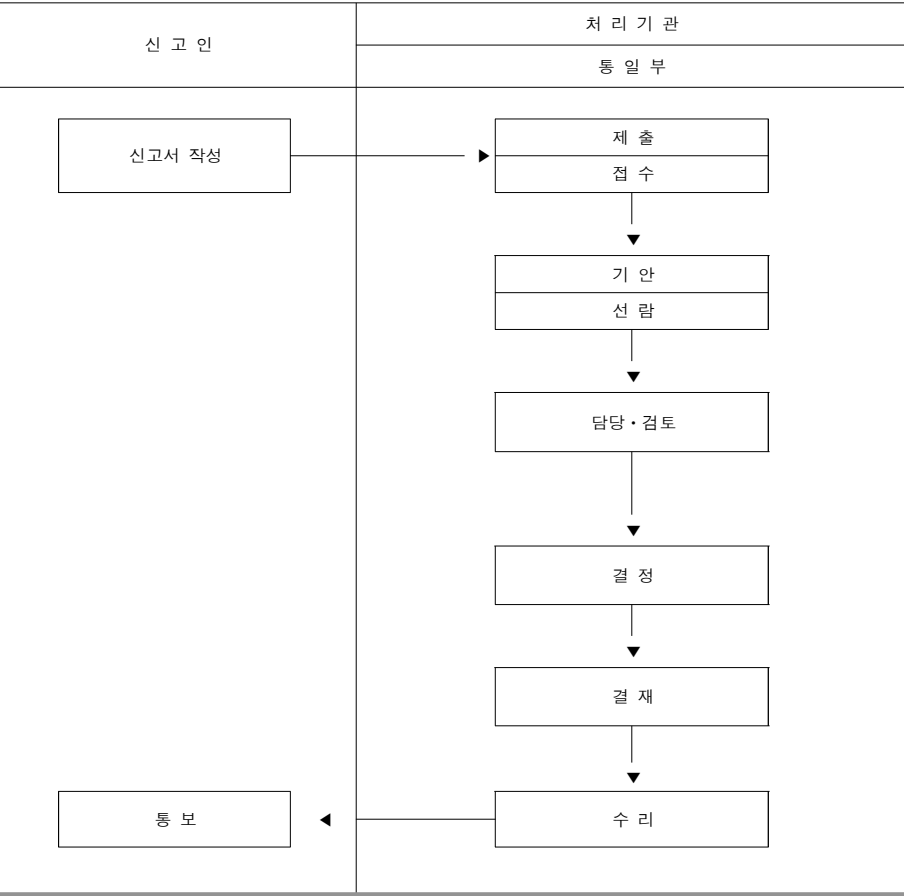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1부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3. 협력사업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업종변경 시에는 ③란에 변경 전·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지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
변경 전
신고사항

신고일자

신고번호

업종별 누적투자금액

③
변경요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 ③란 중 "사업내용 및 규모"란은 투자금액,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③란 중 "코드번호"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